

노인동거 가족의 주택문제와 해결방안의 모색

1. 서론

산업화, 도시화, 분업화사회에서는 가족구성형태 역시 핵가족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사회 문화 경제적 변동이 가족해체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 삼세대가족의 붕괴를 인위적인 노력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택구조, 주택환경의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통해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삼세대동거형 주택개발을 위한 정책은 가족해체의 징조가 나타나는 초기에 손을 써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고, 초기징조가 나타났을 때 처방하는 것은 차선적이고, 문제가 심화된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서구사회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가족 해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해체로 인해서 제기된 노인문제를 가족기능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가나 사회가 그 부양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했다. 그후 이들 국가는 노인 부양을 포함한 사회보장비의 과중 부담으로 국가재정이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에까지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가는 삼세대동거형 주택의 개발을 통해서 부모부양 기능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떠맡기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사후의 처방」적으로 시기를 상실한 정책이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가족해체 현상이 초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 가족기능의 해체 원인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가족해체의 과정을

밟아온 서구사회의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는 초기에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산업사회 적응형 주거모델을 창출해 보자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사회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관이 강한 사회이므로 다소의 정책적 노력만 있어도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삼세대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가. 삼세대가족이 해체되는 요인
삼세대가족 동거형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가족이 와해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이 매우 강하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 모시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바친다. 효를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의식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서구사회가 우리의 가족제도를 동경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족 제도가 계속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는 주택공간도 넓고, 경제적인 어려도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간에 피차 별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 중에는 부모와 동거하기를 꺼리는 경향도 있다. 젊은 자녀들은 효를 하고자 하는 의식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동거에는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부모들 역시 자녀와의 동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별거하는 노인들이 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거나 고학력 노인중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자간에 유친하고자 하는 의식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세대가족 유지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살펴 봄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고자 한다. 이들은 삼세대가 동거하면 피차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 한다. 지난 날 영농사회에서의 삼세대가족에서는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을 뿐 아니라 고부간에도 생활공간이 어느정도 격리되어 있어 부모와 자식간에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의 주택구조는 거실, 욕실 등을 공동사용해야 하므로 일상 생활에서 얼굴을 마주대고 있는 시간대가 증가한 것이 피차 「프라이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조사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삼세대동거에 있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부모측에서 불편을 느낀다는 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로 의견충돌이 잦은 상황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
- ② 며느리 눈치 때문에 동년배의 친구들을 자택으로 불러들일 수 없어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
- ③ 신체가 쇠약해졌으므로 하루종일 손자녀들을 보아 주거나 같이 놀아 주자니 힘에 부친다.
- ④ 며느리가 요리한 음식이 구미에 맞지 않을 때가 많고, 때로는 음식을 직접 만들고도 싶지만 며느리 눈치 때문에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
- ⑤ 손자녀에 대한 며느리의 가정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참견하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대로 방임하자니 마음이 상한다. 차라 리 보지 않고 지내는 것이 속편할 것 같다.
- ⑥ 거실의 사용권, 텔레비전의 다이얼의 선택권, 침실의 크기와 실내장식 등에 있어서 노인은 젊은이들 방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아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쾌감이 가중된다.
- ⑦ 며느리가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고 집안살림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다. 별거를 하며 보지 않고 지내면 그러한 감정은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녀들 역시 노부모와 동거함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들은 노부모와 동거함에 있어 자녀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점을 요약한 것이다.

- ① 가치관 때문에 제기되는 잦은 의견 충돌과 반복되는 잔소리로 인해서 항상 정신적으로 긴장상태가 계속된다.
- ② 노부모님의 식성이 까다로워서 식사 준비를 이중으로 해야 할 때가 적지 않다.
- ③ 부부간의 애정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야 한다.
- ④ 옷을 살 때, 외식할 때, 친구들이나 친정식구들이 방문했을 때 부모 눈치를 보아야 한다.
- ⑤ 부모님과 동거하면 여름에 더울 때 옷을 마음대로 벗을 수가 없어 불편하다.
- ⑥ 세대간에는 생활시간대가 다른 것이 문제라는 주부도 있다. 새벽 4시부터 부스럭을 떨기 때문에 새벽잠을 설칠 때가 많고 식사시간대도 다를 때가 있어 생활리듬이 깨진다는 것이다. 또한 金兌玄(1981), 朴在侃(1984) 등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20% 내외는 노부부 또는 노인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 노부부 또는 노인단독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분리의 원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 ① 자녀부부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부부만 이곳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② 자녀들은 직장에 따라 타지방으로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식을 따라 다닐 수가 없어 서울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경우.
 - ③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 특히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자식과 별거하는 것이 도리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④ 자식은 없고 딸만 있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갔기 때문에 노부부 끼리만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상 우리는 삼세대가족을 유지해

나기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았다. 이 분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날의 가족해체는 효의식 또는 효행적도와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주택구조 또는 주택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 서구사회 가족관계에서의 교훈 미국이나 서유럽제국에서도 노인들은 결혼한 자식과의 동거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Longino(1981)의 조사에서는 미국의 많은 노인들은 자식과 동거하면 어린 손자녀들이 떠들거나 성가시게 굴어 싫다고 했고, 특히 젊은 자녀들의 무례한 행동이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러한 요인들은 노부모들이 자녀와 별별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Brody(1981)는 자녀들이 노부모와 동거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가운데서 ① 현대사회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노부모를 보살필 기회가 감소되었고, ② 핵가족에서는 부부 중심의 애정생활이 중요시되는데 다세대가족구조(Multi-generation-family structure)에서는 그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부모 자식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남남이나 다름없는 관계는 아니다.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부모자식간의 상호교류, 상호원조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도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가족도 적지 않다. Huttman(1985A)은 미국에 있어서도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자녀들과 근거리에서 거주하면서 상호왕래가 빈번할 뿐 아니라 일신상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상대는 자식들이라 했다. 노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Shanas(1980)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노인 중 50% 이상은 자녀와 근거리에서 거주하거나, 동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The Elderly live close to their children, either in the same home or next door) 그리고 나머지 중 많은 노인들도 자녀들 집에서 10분 안팎의 거리에 거주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요일 같은 휴일에는 부모택을 방문하거나 또는 부모를 초대하여 하루를 같이 지낸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두드러진다고 했다.

Robinson and Thurnher(1979)는 미국의 많은 노인들은 별거하는 자녀들로부터 어떤 형태이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도움의 주된 내용은 ① 가옥의 수리와 정돈, ② 선물, ③ 병간호, ④ 자질구레한 집안일 (household chores), ⑤ 심부름 가는 일 (running errands), ⑥ 계약서의 작성 또는 서명 등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을 때의 도움, ⑦ 외출할 때 차로 태워다 드리는 일, ⑧ 금전 또는 음식물의 도움, ⑨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 도움 등이라 했다.

Goodman et al(1984) 등의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자녀들로부터 이와 같은 보살핌을 받는 노인들은 시설수용 (institutional long-term care facilities) 노인들보다 정신적·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생활만족도 척도에서도 매우 높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Fleisher and Kaplan(1982)은 일반적으로 고령의 노인들은 가족에 의해서 부양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이 노후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서구제국의 친족망의 상호작용 관계를 연구한 Cantor(1980)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의 노인들 중 상당수는 자식과 동거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자식 측에서 동거를 원할 때는 그 뜻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한 그들 중 많은 비율은 자녀 또는 친척과 근거리에서 거주하며 자녀들로부터 신체적, 물질적 원조를 받고 있다고 했다.

Hut tman(1985 B)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별거하는 부모를 돕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많은 비율의 젊은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젊은이들은 효에 대한 책임의식 (filial responsibility)이 강했으며, 그들은 부모에 대한 보살핌이 소홀했을 때 죄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저소득층 젊은이들 일수록 효의식이 강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Rathbone-Mc-Cuan(1982)은 많은 비율의 젊은이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고, 또한 부모를 보살피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구사회의 젊은이들도 효의식이 있고, 부모 보살핌을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서구사회에서도 시기를 잃지 않고(19세기말 또는 20세기초 부터) 삼세대동거형 주택의 개발 또는 보급정책이 있었다면 삼세대 가족의 형태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서구사람들은 삼세대동거를 원하고 있고 가족제결합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단 엮어진 물을 그릇에 다시 주어 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구사회가 범한 시행착오의 교훈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가족해체 현상이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전통적 가족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산업사회에 적응가능한 삼세대동거형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모델의 가족패턴을 형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高永復(1983)은 노인문제와 관련된 논문에서 현대적인 효는 합리적인 것이라야 한다고 했고, 또한 그것은 현대사회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현대적인 효는 피차 능력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러한 이론은 삼세대 동거형 주택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삼세대동거형 공동주택의 시안

삼세대가족에 있어서 가족구성원 중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은 사회적 역할이 없는 노인들이다. 따라서 주택구조와 주택환경이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은 Hunt(1978)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구조와 주택환경에 관한 조사에서도 재삼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동향을 보면 주택구조나 주택환경 조성에 있어서 노인들의 욕구 (needs)는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삼세대동거형 주택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들이 유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가. 아래층을 노인전용주택으로 하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때 아래층 (ground floor) 을 노인전용주택으로 할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용 주거의 내부구조는 거실 겸 침실 (bed sitting room) 하나와 샤워장치가 달린 화장실 그리고 작은 공간의 벽장 등으로 한다. 작은 냉장고와 차를 끓일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한다. 식사, 세탁은 윗층에 거주하는 자녀 집에서 해결한다. 코펜하겐의 주택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이같은 주택구조의 보급을 통해서 자녀들이 노부모를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불란서에서도 삼세대가족으로의 재결합을 돕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주택의 건설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미 가족해체가 심화된 상태여서 그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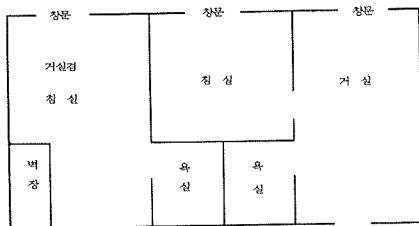
이러한 주택구조에서는 노부모나 자녀들은 각기 자신의 사생활을 침범 당하는 일이 없이 삼세대가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족해체가 초기적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주택구조는 부모 자식간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인의 주거를 아래층으로 배정한 것은

고층을 기피하는 심리적 특성 때문이다. 승강기나 계단 사용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아래 층에는 동년배의 노인들이 집단거주하고 있어 이웃에 있는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무료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소형아파트(방 2 개 이하)의 구입능력 밖에 없는 저소득자로서 부모를 부양해야 할 대상자에 입주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노인주거는 영가 임대주택 (low-rent-housing) 제도를 도입해서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도 병행개발한다. 만일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노인주택분만은 장기저리융자를 해주는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프렐형 (flat style) 삼세대동거 주택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총건축계획중 일정비율의 주택은 삼세대가 동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렐형으로 건축해 보자는 안이다. 같은 주택이면서도 출입문은 두 개가 있는 주택구조이다. 자녀들이 사는 가옥의 구조는 일반 아파트 구조와 대동소이하게 만들고 복도 (ambulatory) 바로 옆에 별도의 출입문 (next door)을 또하나 두어 그 곳에 노인들이 거주하는 방을 마련해 보자는 안이다. 노인방의 구조는 침실 겸 거실 하나와 욕실 겸 화장실, 그리고 벽장 등으로 구성한다.



복도 (ambulatory)
프렐형 3세대동거의 공동주택

이러한 주택구조에서는 부모와 젊은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범당하는 일이 없이, 그리고 별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특징을 지닌 상황에서 자녀들과 동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위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격리된 상태의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구조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형태에서는 노인이 동년배집단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아 여가 투성이의 노후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가족과의 상호작용은 제 1안에 비해서 더욱 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 노인전용아파트의 설치운영 아파트단지내에 사회복지 또는 비영리의 성격을 띤 노인전용의 아파트를 설치운영하되 그 입주자격은 단지내에 자녀가족이 거주하는 부모에게만 부여한다는 안이다.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성격차이 또는 기타 가정형편상 부자간이 별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택정책을 통해서 이들을 가급적이면 피차 스프가 식지 않는 근거리에서 거주케 함으로써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가령 3 천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경우 단지 중심부에 노인이 거주하기에 편리하도록 특별설계된 아파트를 1~2 동 건설한다. 이러한 주택은 노인이 자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설 (self-contained units)을 구비한다. 이곳에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입주노인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여 학습과 취미오락활동,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노부부세대를 위한 주택 삼세대동거형 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는 노인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뜻도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자식과 별거하지 않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용의 아파트의 건립계획도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전용의 아파트는 격리된 장소여서는 안된다. 일반주민용 아파트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 (family-and-neighbor-support system)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노인복지청 (Administration on Aging)에서 실시하는 AAA 프로그램 (Area Agency on Aging)에 의하면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지역주민에 의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complex system of care)이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마. 주거환경의 선호도와 택지선정 삼세대동거형 주택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Butler et al(1983)는 영국환경청 (Department of Environment)의 조사자료를 인용하며 많은 노인들은 지금까지 살아 온 낡은 집에서 그대로 눌러 살기를 원한다고 했다.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사귀어온 많은 친구, 그리고 정든 고향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의식때문이라 했다. 이 조사에서는 영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분의 1은 1919년 이전에 건축된 고옥에 살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거주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고 했다.

만일 이주를 해야할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곳을 택하겠느냐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 단독주택 (dwelling) 또는 방가로 (bungalow) 형을 희망했고, 아파트형 (flat style)은 원치 않았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파트단지에 거주할 경우는 부득이 그 근처로 이주하게 되는 비율이 많다고 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양로원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Struyk & Soldo(1980) 팀의 조사에서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기가 용이한 달동네 (빈민촌) 같은 주택지구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동년배의 친구, 친지 또는 친척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에서 피차 활발한 교류를 맺으며 생활했을 때 더욱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노인들은 아파트단지의 시멘트 콘크리트 숲 속에 거주하면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파트단지에서도 노인이 집단거주할 수 있는 구역이 설정된다든가,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도 좋은 공간도 넓은 노인복지회관 같이 곳이 있어 이곳에서 동년배 노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만 갖추어 진다면 아파트단지를 기피하려는 노인들의 의식은 많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노인들은 인기척이 없는 한적한 곳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다.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 곳을 선호한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구획에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빈번한 상호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로원은 도시에 격리된 한적한 곳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노인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모르는 소치이다. 노인을 사회에 고립시키지 (socialisolation) 않는 것이 노인을 위한 방법이다.

4. 결 론

인간의 노후생활은 가족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노인 역시 그렇게 하였을 때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앞서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부모를 자녀들이 보살핌에 있어서는 정부나 사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Fleisher & Kaplan(1982)은 산업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을 자녀들에게 부하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돕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Johnson과 Catalana(1982) 등은 가족 또는 지역주민에 의해서 노인을 보살피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는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았을 때 가족해체가 된 이후에 시설수용을 하는 것보다는 재정부담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삼세대가족이 해체 되려는 초기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단계이므로 삼세대동거형 공동 주택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면 서구와 같은 가족해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삼세대동거의 가족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구조, 주택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책지원의 수반없이 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가. 장기저리용자와 재산세 등의 감면조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자로서 노부모를 부양할 입장에 있는 해당자에 대하여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기간에 한하여 삼세대동거형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주택구입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하고,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한다.
나. 영가임대주택제도의 도입
주택사정으로 인해서 가족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해당가정에는 삼세대동거형 주택임주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노인주거의 전용면적에 한해서는 영가임대 (low-rent-housing) 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다. 삼세대동거형 주택건축의 의무조항
주택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때는 일정 비율의 주택은 반드시 삼세대동거형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supply-side) 에게 장기저리용자 또는 세제상의 「인센티브」 를 부여한다.
라. 재산세의 납부연장조치
주택소유가 노인명의로 되어 있는 가옥에 대하여는 그 노인이 사망할 때까지 또는 가옥을 매각할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조치 (tax breaks) 를 취하고 가옥구조를 삼세대동거형으로 개조하는 경우는 가옥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용자해 주는 제도를 강구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면 될 수록 삼세대가족 해체의 속도 또는 비율은 감소될 것이고, 만일 현상태 그대로

방임된다면 21세기 초에는 국가나 사회가 노인부양을 위해서 더욱 많은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高永復(1983), 傳統社會의 孝概念과 現實的 課題, 峨山社會福祉財團, p. 55.
金兌玄(1981), 韓國에 있어서의 老人扶養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孝道村落設立 推進委員會(1985), 孝道村落 設立을 위한 基本計劃.
金聖順(1985), 高齡化社會와 勞動, 二友出版社.
朴在侃(1985), 21世紀 老人問題와 私的 扶養 機能, 韓國老年學 No. 5.
朴在侃(1984), 老人餘暇施設 및 그 프로그램에 관한 調查研究, 韓國老人問題研究所.
峨山財團(1985), 老人福祉便覽, 峨山社會福祉 事業財團.
Bathbone-McCan, Eloise(1982). Geriatric Day Care : A Family Perspective. Gerontologist (16) pp. 517~521.
Brdy Elai ne M. (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 People. Gerontologist (21) pp. 471~480.
Butler, A., Oldman, C., and Greve J., (1983), Housing and the Elderly, Sheltered Housing for the Elderly. 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London. p.27.
Cantor, Marjorie H. (1980) The Informal Support Systems : Its Relevance in the Lives of the Elderly. In Neil McClusky and E. F. Brogatta(eds). Aging and Society. Beverly Hill, Calif. Sage Publication. p.142.
Fleisher, D. and B. H. Kaplan(1982). Effectiveness of A Neighborhood based informal Support System. Gerontologist (22) pp. 224~226.
Goodman, Catherine(1984), Natural Helping Among Older Adults. Gerontologist (24) pp. 138~143.
Huttman E. D. (1985) The Informal Support System : Kin and Community, Social Service for the Elderly. The Free Press. N. Y. U. ly S, A. p. 87.
Hunt, A(1979). The Elderly At Home, A Survey carried out on Behalf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by the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London HMSO. p. 4.
Johnosn, Cooleen, and Donald Catalano(1982).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upports to Impaired Elderly(22) p. 78.